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65
----------	-----

2016년 2월 2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1월 28일, 남창진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6년 2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남창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신고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으로 “경영하는 자”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등록을 한 자”를 “등록을 한 사람”으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민이 아닌 자”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사람”으로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를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을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으로, “신고인에 대하여”를 “신고인에게”로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나. 입법예고 : 미시행(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임¹⁾)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원안 동의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²⁾ 하였음

2) 택시물류과-3593(2016.2.11.)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신고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경영하는 자”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제2호중 “등록을 한 자”를 “등록을 한 사람”으로, 제3호중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2호중 “국민이 아닌 자”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신고한 자”를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를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제3항중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을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으로, “신고인에 대하여”를 “신고인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신고하는 사람</u>----- ----- ----- -----.</p>
<p>제2조(정의) (생략)</p> <p>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u>경영하는 자</u></p> <p>2. 운송사업자 :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u>등록을 한 자</u></p> <p>3. 운수종사자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u>종사하는 자</u></p> <p>4~11 (생략)</p> <p>12. 외국인 관광객 : 「국적법」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u>국민이 아닌 자</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운수사업자 : ----- ----- ----- <u>경영하는 사람</u> -----</p> <p>2. 운송사업자 : ----- ----- ----- <u>등록을 한 사람</u> -----</p> <p>3. 운수종사자 : ----- ----- ----- <u>종사하는 사람</u> -----</p> <p>4~11 (현행과 같음)</p> <p>12. 외국인 관광객 : ----- ----- <u>국민이 아닌 사람</u> -----</p>
<p>제3조(포상금 지급대상)</p> <p>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u>신고한 자</u>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제3조(포상금 지급대상)</p> <p>① ----- ----- ----- ----- <u>신고한 사람</u> ----- -----</p>

<p>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p> <p>1~11 (생략)</p> <p>② (생략)</p>	<p>----- ----- ----- -----.</p> <p>1~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p> <p>① (생략)</p> <p>1~3 (생략)</p> <p>②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u>지급 받고자 하는 자</u>는 시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p> <p>①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② ----- --- <u>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u> --- ----- ----- -.</p>
<p>제7조(신고인의 보호)</p> <p>① 시장은 <u>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u>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u>신고 대상이 되는 자</u>는 이를 신고한 <u>신고인에 대하여</u>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신고인의 보호)</p> <p>① ---- <u>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u> ----- ---- <u>신고인에게</u> ----- -----.</p>